

성명서

『입원을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통해,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과 검사소견 등은 진료기록부 상에 확인되어야"하고,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입원료 일반원칙란을 신설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본회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는 의사와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규제의 덫을 씌우고,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에 큰 악영향을 미칠 본 고시 개악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결사 반대한다.

첫째, 입원은 의사에게 입원 진료를 권유받은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검사와 처치, 수술의 입원 여부는 환자 증상의 위중함과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본 고시 개정안의 문구처럼 외래에서 시행 가능하다 것이 입원이 불가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만약 외래에서 시행 가능하다고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환자의 상태와는 상관 없이 억지로 외래에서만 검사와 처치, 수술을 받도록 끼워 맞추게 되어 입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그동안 받아왔던 최선의 진료를 못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둘째, 입원 환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대법원의 판례에도 분명하게 어긋난다.

2009년 대법원 판결(2008도4665)은 입원을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는 입원 환자의 규정을 고시로 묵지 않고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외래, 입원 간의 제약 때문에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인데, 본 고시 개정안은 이런 선한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본 고시 개정안은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입원에 대한 보편적 관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①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의 대상과 의사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본 개정안은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환자의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의료 현장에 법적인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입원은 자신의 일상 생활을 포기하고서라도 치료에 전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질병 또는 재해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으로 정해진 의료기관에 입실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입원의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입원에 대한 보편적 관념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넷째, 위와 같은 모순과 불합리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고시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보건부와 심평원은 본 고시 개정의 이유로 심사 투명성을 들고 있지만, 오히려 이 고시로 인해 최선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진정한 심사 투명화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심사 실명제를 통해 삭감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자는 것이지, 진료권을 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본 고시 개정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불순한 특정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입원을 정의하는 이번 고시는 국민의 건강 보다는 그들의 이익에 혈안이 된 민간 실손보험사들에게 유용한 법적 근거로 이용될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한 민간 실손보험사들의 행태를 볼 때, 이 고시를 근거로 치료가 종결되어도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후에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환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불편해 질 것이고, 비싼 보험료를 매달 힘들게 납입한 가입자들이 필요할 때 응당 받아야 할 보험비는 지급 거부 당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한한 본 고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특정 집단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해명하라.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윤리적 비판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라. 앞으로도 본회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려는 개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이다.

2020. 12. 31

대한신경과 의사회 회장 이은아